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제 3조 【특약의 무효】
- 제 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7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13조 【해지환급금】
-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18조 【보험계약대출】

제5관 기타사항

- 제19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에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때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
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
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
다) 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정액형(10년, 20년, 100세 보증)
보증기간부 (개인계약,부부계약)	체증형(10년, 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용어해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며,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 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해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제 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전환일시금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

의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후 종신연금형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 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폐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금 개시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특약의 소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
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
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
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
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
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
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용어해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1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이하 “전환전 보험기간”이라 한다)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₁₂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text{■ 기중이동평균이율 }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③ 제2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제2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제1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

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9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제9조 제1호)

지급 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 연금(제9조 제2호)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체중형 (10년/20년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주) 1.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 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 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용어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6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9조 제1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연금 (제9조 제2호)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 이율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 이율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제13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
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
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성】
-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5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 9조 【해지환급금】
-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 제13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자는 연금전환 신청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정액형(10년, 20년, 100세 보증)
보증기간부	체증형(10년, 20년 보증)
(개인계약,부부계약)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용어해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폐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제 5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학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별표1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이하 “전환전 보험기간”이라 한다)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text{■ 가중이동평균이율 }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③ 제2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제2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제 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3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별표1)

연금 지급기준표

■ 연금(제7조)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지급액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체증형 (10년/20년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지급

- (주)
1.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보험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로 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 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 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용어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

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
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
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연금 (제7조)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 환급금 (제9조 제1항)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